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기본계획과 자살실태조사 주기 단축 및 자살예방의 달 신설 등〉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9932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오 세 일

목 차

I . 개요	1
II . 검토의견	3
1. 기본계획과 자살실태조사 주기 단축 및 자살예방의 달 신설 등	3

I. 개요

1.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9932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4. 17.
- (3) 회 부 일 : 2025. 4. 18.

나. 제안이유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는 1만 4천여 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인구 10만명당 28.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음. 이러한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살의 원인과 동기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회·경제·문화적 환경 변화에 따른 자살요인에 적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조사대상자의 소득, 직업, 건강 등의 특성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자살 동기와 원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와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여 자살예방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 (1)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함(안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 (2) 자살실태조사 항목에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과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수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 (3)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지정하고, 필요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함(안 제16조).

II. 검토의견

1. 기본계획과 자살실태조사 주기 단축 및 자살예방의 달 신설 등

- 개정안은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및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자살실태조사의 내용으로 조사대상자의 소득이나 직업 등을 포함시키며,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정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안 제1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신설, 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가는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살예방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u>5년</u>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① ----- ----- ----- ----- <u>3년</u> -----.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u>5년</u> 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 ----- ----- ----- <u>3년</u> ----- -----.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 -----.

현행	개정안
1. (생략) <신설> <신설> 2. ~ 4. (생략) ③ ~ ⑤ (생략) 제16조(자살예방의 날) ①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자살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u>자살예방주간</u>으로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자살예방의 날</u>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1. (현행과 같음) 2.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 등 <u>조사대상자의 특성에 관한 사항</u> 3. 자살자의 자살원인, 동기, 수단 등에 관한 사항 4. ~ 6.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자살예방의 날) ① ----- ----- ----- ----- ----- -----<u>자살예방주간</u>으로 하며,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한다. ② -----<u>자살예방의 날(자살예방주간 및 자살예방의 달을 포함한다)</u>-----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사 외에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은 별도로 자살예방기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안 제7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은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및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를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인데, 자살과 관련된 경향성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그에 부합하는 예방정책을 마련하는 장점이 있음.

다만, 기본계획 수립 이후 국가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며 그 효과성을 분석하여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하는데 기본계획 수립 주기의 단축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정책의 혼란을 야기하거나 개별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고, 기본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¹⁾의 기준이 되므로 빈번한 기본계획 변경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또한, 자살실태조사의 주기 단축은 현재 체계와 비교할 때 자살실태에 대한 정보를 시의성 있게 수집할 수 있는 장점은 있을 것이나 그 시행에 소요되는 예산이나 행정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자살률의 급작스러운 증가 등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²⁾가 시행령에

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8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제10조의2에 따른 자살예방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6조(자살실태조사의 실시 등)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자살률 증가 등의 사유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제1항의 자살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다는 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³⁾에서도 국가계획과 실태조사의 주기를 5년으로 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안 제11조제2항은 소득, 직업, 건강, 가족관계 등 조사대상자의 특성과 자살원인 등에 관한 사항을 자살실태조사에 포함시키려는 것인데, 현행 자살실태조사의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이나 자살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사항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으므로 타당한 입법적 조치임.

□ 안 제16조는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정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와 별도로 자살예방기간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데,
현행법에서 자살예방의 날을 매년 9월 10일로 정하고 있고, 이는 2003년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자살예방협회(IASP)가 해당일을 ‘세계 자살예방의 날’로 지정한 데 따른 것으로서 자살예방의 날이 속하지 않는 별도의 달의 추가적 지정 및 그 밖에 자살예방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1조(자살실태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살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별·나이·학력, 혼인 및 취업 상태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자살에 관한 생각, 자살을 시도한 횟수 등 조사대상자의 자살 위험요인에 관한 사항
3. 신문·방송 및 인터넷 등 언론의 자살보도가 자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살실태 및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국가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의 기본계획(이하 “국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정신건강증진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1. ~ 8. (생략)

기간의 지정·운영은 매년 9월 개최하는 자살예방 교육이나 홍보활동4)의 사업적 집중도와 국민적 관심을 분산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점5), 9월에 해외에서도 자살예방 국제적 캠페인이 함께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에 대한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의견 >

부처명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보건복지부	○기본계획 수립 및 자살실태조사 실시 주기로써 3년은 지나치게 짧은 주기로 생각되고 정책 혼란 및 소요예산과 행정비용을 고려할 때 현행 유지가 바람직해 보임. ○자살실태조사의 항목으로서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추가하고 자살자의 자살원인이나 동기를 포함시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함. ○매년 3월을 자살예방의 달로 정하는 것은 매년 9월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의 집중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대구광역시 중구	○자살예방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하는 것은 국가의 자살예방 정책의 기초가 빠르게 전환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실효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

4) 보건복지부는 매년 9월 10일과 그로부터 일주일간의 자살예방주간에 자살예방의 날 기념식* 및 갈생(같이 살자) 서포터즈 박람회**, 그 밖의 홍보캠페인***을 수행하고 있음.

* (자살예방의날 기념식) 사회 각계각층 유공자 포상 수여, 자살예방 핵심 슬로건 공표 및 주제 영상 상영, 자살예방 퍼포먼스

** (갈생 서포터즈 박람회) 자살예방주간(9.9~9.15.)에 박람회를 통해 자살예방 정책 홍보, '마음구조 109' 홍보 부스 등을 기획·운영

*** 2024년 자살예방주간 민관협업 캠페인: 네이버(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 관련 배너 노출), 코레일(자살예방 공익광고 송출 및 홍보물(포스터, 리플릿 배포), LG트윈스(자살예방 공익광고 영상 송출), 대한약사회(전국 약국 대상 자살예방 포스터 배포)

5) 참고로 기념일과 해당일을 포함한 주(週)나 월(月)을 매칭시켜 기념하는 다수의 입법례가 있음.

「건강가정기본법」

제12조(가정의 날)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신건강의 날) ① 정신건강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로 하고, 정신건강의 날이 포함된 주(週)를 정신건강주간으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건강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제6조(노인의 날 등) ①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인천광역시 경기도 화성시 경기도 여주시 경기도 동두천시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기념일은 국민의 관심을 환기하고 공공정책의 상징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3월을 추가적으로 자살예방의 달로 지정하는 것은 정책 메시지의 분산과 행정적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음.
---	--

문 의 처
02)6788-5498